

자동차종합검사 기술인력 교육기준(제18조제2항 관련)

1. 신규교육

교육과목	교육시간	교육내용
인성교육 및 자동차 관련 법령	20시간 이상	가. 자동차검사 기술자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지식 및 자세 함양 나. 자동차관리법령 및 대기환경보전법령 다. 소음진동규제법령 및 그 밖의 관련 법령
자동차공학		자동차 검사 및 정비 관련 신기술
자동차 검사기기	5시간 이상	검사기기의 구조기준 및 취급요령
자동차 검사실무	10시간 이상	검사실습 및 행정관리 요령

2. 정기교육

교육과목	교육시간	교육내용
인성교육 및 자동차 관련 법령 자동차공학	8시간 이상	가. 자동차검사 기술자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지식 및 자세 함양 나. 자동차 관련 법령 다. 검사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라. 자동차 검사 및 정비 관련 신기술
자동차 검사기기	2시간 이상	검사기기의 구조기준 및 취급요령
자동차 검사실무	4시간 이상	검사실습 및 행정관리요령

3. 임시교육

교육과목	교육시간	교육내용
개정법령	4시간 이상	법령 개정 등으로 필요한 교육

비고: 임시교육과 자동차 검사 및 정비 관련 신기술은 온라인 교육으로 갈음할 수 있다.